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00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3. 11
제 출 자: 달성군수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폐지이유

특별회계 설치 이후 별도 세입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어 조례 존치의 이유 부재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성별/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.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.

3) 입법예고: 2019. 1. 30. ~ 2. 19.

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